	o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선사 고**은 2014.6.4.부터 2016.3.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감물면 소
	재, 풍산원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숙소 안에서, 고**을 비뇨기과 의사로 알
	고 있는 김**, 이**의 성기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형제인'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기확대시술을
	하고 합계 1,120만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방사선사 고**은 영리를 목적으
	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
	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하여, 의료기사법 제5조제4호 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해당함
처분관련 법적근거	o 구 의료기사법 제66조제1항제7호
	o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
	호,2015.1.5.) 2.개별기준 다.05)
주의사항	o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
	다

## ※ 주의사항 ※

o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708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 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